

입 법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0 - 53호

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9일

창원시의회 의장 이 치 우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「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종사자의 정의 추가 및 적용 범위의 변경에 대한 사항
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- 다.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의 추가(안 제5조)
- 라.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추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5조의2)
- 마.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4)
- 바. 공동주택종사자의 피해구제 조치에 미흡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 추가(안 제6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 입법지원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지원담당(전화:055-225-5374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, FAX,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

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20. . .

발 의 자 : 최영희·김상현·김경희·박남용·공창섭·백승규
구점득·이찬호·박춘덕·이종화·문순규·주철우
박현재·김상찬·조영명·박선애·이천수·노창섭
전홍표·정길상·진상락·이해련·한은정·이우완
의원 (24명)

1. 제안이유

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「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종사자의 정의 추가 및 적용 범위의 변경에 대한 사항 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- 다.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의 추가(안 제5조)
- 라.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추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5조의2)
- 마.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4)
- 바. 공동주택종사자의 피해구제 조치에 미흡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 추가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
- 나. 관련 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- 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공동주택종사자”란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공용시설물 등”을 “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종사자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시장”을 “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안전율”을 “안전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
2.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4.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
5.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방법용”을 “무인택배함 및 방법용”으로 한다.

2. 경로당, 경비실,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의 보수(냉·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)

제5조의2의 제목 “(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)”을 “(공동주택종사자

의 노동환경개선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비원 등 노동자”를 “공동주택종사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보수”를 “보수를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부당대우”를 “입주자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여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

5.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·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2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요청 또는 상생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입주자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. 다만, 피

해구제 조치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.

- ④ 경상남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경비원 등 공동주택종사자”란</u> <u>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</u> <u>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</u> <u>경비원, 청소원, 관리사무소 직</u> <u>원 등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에서 「주택법」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<u>공용시설물</u>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용</u> <u>시설물 및 공동주택 종사자 등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·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종합계획을 수립, 시행</u>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 <u>안전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</u> <u>활성화를 위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u></p> <p>1. <u>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</u></p>

-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
- 2.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- 3.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- 4.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
- 5.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제5조(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)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2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요청 또는 상생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6조(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)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한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

제5조(지원대상)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한정한다. <단서 신설>

1. (생략)

수 있다.

1.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주자 의무조항

2.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 승계 및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근로기간의 보장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단지의 선정 방법 및 평가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종합계획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.

③ 경상남도 및 시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, 제10조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 해당하는 최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대상) -----

---. 다만, 제2호의 냉·난방기 설치 등은 하자보수 기간 이내라도 지원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경로당, 경비실,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

3. ~ 7. (생략)

8. 방법용 정보통신설비(CCTV설비, 전자출입시스템, 주차관제설비 등)의 설치 및 유지 보수

9. · 10. (생략)

제5조의2(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)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노동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 지원

3.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

4. 부당대우 사례 발생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2. 경로당, 경비실,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의 보수(냉·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)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무인택배함 및 방법용 -----

9. · 10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경비원 등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) -----
----- 공동주택종사자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여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

3. ----- 보수를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---

4.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---

5.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

5.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의3 (생략)

제6조(보조금 지원) ①·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7조 ~ 제16조 (생략)

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

6. ----- 공동주택종사자-----

제7조의3 (현행 제5조의3과 같음)

제8조(보조금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경비원 등 공동주택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후 피해구제 조치에 미흡한 공동주택단지

제9조 ~ 제18조 (현행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